

◎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-30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28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및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주식회사 지**트너스 등 4건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 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(전화 : 02-6735-8134, 팩스 : 02-6735-8144 / E-mail : mineeee@korea.kr)

행정처분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주식회사 지**트너스	121111- 0*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**-5817	여론조사
2	주*미	840709- 2*****	경기도 부천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1800-**-86	부동산

3	최*용	760928-1*****	경기도 오산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3,750,000	1644-**-73	부동산
4	주식회사 엠**리	131411-0*****	경기도 안산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70-****-4817	여론조사